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 붙임 2

##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처리 기준

- 입사지원서 내 인적사항 입력란을 제외하고, 자기소개서 작성시 개인 인적사항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 패널티 부여함(위반 건수에 따라 최종점수에서 감점 처리)
- 블라인드 처리 항목 : 성명, 성별, 출신지역, 나이, 출신학교명, 가족관계, 혼인여부, 신체조건(키·체중), 종교 등
  - ※ 경력과 관련된 기관명(우리 공단 포함), 직무 관련 과목 및 성적, 보유 자격증 등은 기재 가능

### □ 블라인드 기준 및 위반 예시

구분	기준 및 위반 예시
성명	- 이번 채용에 지원하게 된 김보훈~
성별	- 군복무를 '현역(운전병, 군수병, 전경, 의경 등)'으로 입대하게 되어~ -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여~ ※ 의무 군복무는 남성만 가능하므로 성별 직접 유추 가능 ※ 군복무 시절 등 장교부사관에도 해당 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장교부사관은 성별 구분없이 복무 가능) - 여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 집안의 든든한 맏형으로서~,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어머니)가 되고자~
출신지역	- 평생을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라~, 서울토박이인 저는~
나이	- 올해 스무살이 되어~, 2002년 월드컵이 열리던 해에 태어나~
출신학교	- 보훈대학교 최우수 졸업생으로서~
가족관계	- 보훈공단에서 정년퇴직하신 아버지께서~ - 현직 국회의원이신 저희 어머니와 함께~
혼인여부	- 2년 전 결혼 후에, 아내(남편)과 함께~
신체조건	- 저는 어릴 때부터 체중 관리로 50kg를 유지 중이며, 제 키는 180cm이 넘어~
종교	- 불교 동아리 회장으로로서~, 매일 교회에 나가는~

- 패널티 : 블라인드 위반 1건당 최종점수(100점 만점)에서 1점 감점 처리함

### 붙임 3

### 자기소개서 불성실 판단 기준

□ 불성실 작성(예: 미작성, 분량 미달, 항목별 같은 답변 넣기(복사해 붙여넣기), 의성어·비속어로 작성, 기관명 오기입 등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과 달리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기소개서는 부적격(불합격) 처리

□ 예시

- 작성 항목 누락
- 문항별 300자 미만 작성
- 동일답변 반복(반복단어 및 문장 포함)
- 타기관 명칭 사용
- 의성어·비속어 사용

## 붙임 4

##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장애유형 및 정도		필기시험 편의제공	면접시험 편의제공	증빙서류 (원본 각1부)		
지 체 장애인	상지	공통사항	·별도 문제지 및 답안지 ·별도 시험실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공통사항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통사항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별도 시험실	장애특성 면접위원 고지 ·도우미 지원	·장애인증명서		
뇌병변 장애인	공통사항		·별도 문제지 및 답안지 ·별도 시험실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특성 면접위원 고지 ·도우미 지원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시험시간 연장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 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공통사항	·공통사항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통사항	·공통사항	·장애인증명서	
시 각 장애인	공통사항		·별도 문제지 및 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특성 면접위원 고지 ·도우미 지원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시험시간 연장 ·공통사항	·공통사항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3이하인 사람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공통사항		·장애인증명서		
청 각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수화통역사 또는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특성 면접위원 고지 ·시험시간 연장 ·수화통역사 또는 서면자료 제공 ·도우미 지원	·장애인증명서	
기타	임신부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 확인서	
	일시적 신체장애				·의사진단서	

##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 □ 발급기관: 「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의사진단서가 아닌 의사소견서,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다만, 임신부의 경우「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 확인서로 증빙 가능

### □ 발급일자: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 신청 하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 원서접수 시 신청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
  - 임신부 응시자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신청할 편의제공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의사진단서 발급내용 예시>

장애유형	장애정도	예 시	※ ①~③ 반드시 기재
시 각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 하지 않은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 시각장애가 심하지 않은 자 - 시력: 나쁜 눈 0.02이하, 좋은 눈 교정시력 0.3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뇌병변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뇌병변장애가 심하지 않은 자 - 증상: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